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동법 시행령 제 67조의 2(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 및 단체) 및 동법 시행령 제 67조의 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준)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31조2항 및 제47조2항 관련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의 에너지 개발사업을 참조하여 「남제주복합화력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첨부 :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0. 11

【첨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 및 요소		환경부고시	적용(평가기준(안))	
		배점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00	
소계		68	68	
1. 환경영향평가 참여 능력 평가	(1)자격 및 등급	14	14	
	(가)총괄(사업책임자)	(3)	(3.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기술자	(6)	(6.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기술자	(5)	(5.0)	절대평가
	(2)경력	17	17	
	(가)총괄(사업책임자)	(4)	(4.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기술자	(7)	(7.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기술자	(6)	(6.0)	절대평가
	(3)실적	17	17	
	(가)총괄(사업책임자)	(4)	(4.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기술자	(7)	(7.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기술자	(6)	(6.0)	절대평가
	(4)업무여유도	17	17	
	(가)총괄(사업책임자)	(4)	(4.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기술자	(7)	(7.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기술자	(6)	(6.0)	절대평가	
(5)교육훈련	2	2	절대평가	
(6)과업의 이해도	1	1	절대평가	
(7)이적계수				
소계		32	32	
2. 환경평가업체 능력 평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14	
	(가)수행건수	(7)	(7.0)	절대평가
	(나)수행금액	(7)	(7.0)	절대평가
	(2)신용도	9	9	
	(가)부실기술자 및 부실업체 등	(6)	(6.0)	절대평가
	(나)제정상태건실도	(3)	(3.0)	절대평가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6	
	(가)개발실적	(2)	(2.0)	절대평가
	(나)투자실적	(2)	(2.0)	절대평가
	(다)활용실적	(2)	(2.0)	절대평가
	(4)공동도급	1	1	
	(가)제2종업체 공동도급	(0.5)	(0.2)	절대평가
	(나)소기업 공동도급	(0.5)	(0.2)	절대평가
	(다)제주도소재업체 공동도급		(0.6)	절대평가
(5)업체능력평가	2	2		
(가)과업기여도	(2.0)	(2.0)	상대평가	
(6)하도급준수			(별점)	

비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각 업체의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에 곱하여 합산한다.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 참여자 능력 평가	(1)자격 및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용역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환경영향평가사</th> <th>해당기술사</th> <th>특급기술사</th> <th>고급기술사</th> <th>중급기술사</th> <th>초급기술사</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책임기술자(총괄)</td> <td>100%</td> <td>95%</td> <td>90%</td> <td>-</td> <td>-</td> <td>-</td> </tr> <tr> <td>분야별 책임평가자</td> <td>-</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td> </tr> <tr> <td>분야별 참여평가자</td> <td>-</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평가자의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및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붙임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 * 평가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기술자(총괄) : 환경분야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3인 (환경분야 중 각 1인) 3인을 기준으로 평가 · 분야별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인 (환경분야 중 각 1인) 3인을 기준으로 평가 ○ 세부배점 : 총괄(3), 분야별책임평가자(6), 분야별평가자(5) ○ 분야별 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 분야별 점수는 배점/분야별 인원 적용 * 2020.1.1.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사업책임기술자(총괄)	100%	95%	90%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참여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14]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사업책임기술자(총괄)	100%	95%	90%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참여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2)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용역참여기술자의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7">경력년수</th> </tr> <tr> <th>17년이상</th> <th>15년이상</th> <th>13년이상</th> <th>10년이상</th> <th>9년이상</th> <th>7년이상</th> <th>7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책임기술자(총괄)</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d>50%</td> </tr> <tr> <td>분야별 책임평가자</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분야별 참여평가자</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은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환경분야 전체경력으로 평가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 적용 ○ 세부배점 : 총괄(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평가자(6) ○ 분야별 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 분야별 점수는 배점/분야별 인원 적용 	구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기술자(총괄)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100%	90%	80%	[17]
구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기술자(총괄)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100%	90%	80%																																		
(3)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실적건수</th> </tr> <tr> <th>15건이상</th> <th>13건이상</th> <th>11건이상</th> <th>9건이상</th> <th>9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책임기술자(총괄)</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분야별 책임평가자</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분야별 참여평가자</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 경력확인서 참여기간/용역기간을 적용하여 평가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 적용 ○ 세부배점 : 총괄(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평가자(6) ○ 분야별 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 분야별 점수는 배점/분야별 인원 적용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기술자(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90%	[17]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기술자(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90%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1. 참여자 능력평가	<p>(4)업무여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Σ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N인] ※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하며, 중복금액 또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N인(해당 중복용역의 참여자수) : 해당중복용역의 착수계에 포함된 참여평가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0인을 기준으로 평가 ○ 세부배점: 총괄(4), 분야별책임평가자(7), 분야별참여평가자(6)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17]								
	<p>(5)교육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2주이상 교육이수</td> <td>(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td> </tr> <tr> <td>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td> <td>(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2]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p>(6)과업의 이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 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자인원수/총평가자인원수 - 전차평가 : 납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납제주복합화력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평가자에 한한다. 	[1]								
	<p>(7)이적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평가자별 참여평가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이적계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개월 미만</th> <th>3개월 이상~6개월 미만</th> <th>6개월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이적계수</td> <td>0.8</td> <td>0.9</td> <td>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이적한 경우에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p>(1)수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및 기타사업([붙임3]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6">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th> </tr> <tr> <th>건수</th> <th>10건이상</th> <th>8건이상</th> <th>6건이상</th> <th>4건이상</th> <th>4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유사평가 실적건수</td> <td>배점</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2">유사평가 실적금액</td> <td>금액</td> <td>250%이상</td> <td>200%이상</td> <td>100%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하며, 진행중인 용역은 공고일 기준 1차년도 이상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차수년도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산출(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ex) 금액 : 총금액 × 실적계수 × 차수년도/총년도 ex) 건수 : 1 × 실적계수 × 차수년도/총년도 ○ 세부배점: 유사평가실적건수(7), 유사평가실적금액(7) ○ 실적계수([붙임2] 실적계수 참조) 적용(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적용) 	구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유사평가 실적건수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14]					
구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유사평가 실적건수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p>(2)신용도</p> <p>(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와 참여평가자를 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참여업체 또는 참여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평가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9] (6)																																						
	<p>(나)재정상태 건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6">재정상태 건실도 평가</th> </tr> <tr> <th>회사채</th> <th>A-</th> <th>A-미만 BBB-이상</th> <th>BBB-미만 B-이상</th> <th>CCC+ 이하</th> <th>미제출</th> </tr> </thead> <tbody> <tr> <td>기업어음</td> <td>A2-</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 rowspan="2">배점</td> <td>대기업/중기업</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0%</td> </tr> <tr> <td>소기업</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회사채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대기업/중기업	100%	90%	80%	70%	0%	소기업	100%	100%	90%	80%	0%	(3)
구분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회사채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대기업/중기업	100%	90%	80%	70%	0%																																		
	소기업	100%	100%	90%	80%	0%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2. 환경평가 능력평가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6] (2)
	(나)투자실적	(2)
	(다)활용실적	(2)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건당 } 1.0 \times A \times B) + \sum(\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
 *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
 < 등급별 가중치(A)>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분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계수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 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3%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가점한다.

○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건당 } 1.0 \times A \times B \times C) + \sum(\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 \times C)$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구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B) 등급별 계수

구분	등급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수	1.0	0.6	0.3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분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0.6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2. 환경평가 능력평가	(4)공동도급	[1] (0.3) (0.3) (0.4)
	(5)업체능력평가	[2] (2)
	(6)하도급준수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3
- 제1종업체 ↔ 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3
-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하며, 본 과업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수행사업으로 공동참여업체 모두 만점(0.3점)을 부여한다.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경우 참여자 인원구성 제외
-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점수 부여

- 참여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한 경우 : 0.4
- * 참여자 인원구성 제외,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시 제외

○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 본 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비고
환산계수	100%	80%	60%	40%	20%	-
배점	2.0	1.6	1.2	0.8	0.4	-

* 상위 5개사 점수 부여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별점의 부과 기준'에 따른다. 발주청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다.

【붙임 1】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평가	경력 및 실적평가
사업책임기술자(총괄)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분야	환경
분야별 참여기술자	환경분야	환경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붙임 2】 실적계수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
당해사업	환경영향평가	1	1	0.6	0.36	0.36

※ 진행정도(협의완료된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통보서 제출 완료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100%, 1차년도 이상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1차년도 이상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용역은 결과통보서 제출한 차수년도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를 적용하여 평가
 진행정도 = 결과통보서 제출 차수(년)/과업기간(년)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1항에 의거 하도급 수행실적은 제외

【붙임 3】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구분	용역분야	평가 대상
유사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 시설용량이 10,000kW이상인 화력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0,000kW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기타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 시설용량이 3,000kW이상인 수력 또는 양수발전소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0,000kW이하인 열발생 설비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 시설용량이 10,000kW이상인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 설비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 ▶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장(貯炭場)

※ 상기 평가대상에 대한 시설 또는 설비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행한 경우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